

안산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조례안

의안 번호	8-347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4. .

제출자 : 안산시장

제정이유

- 안산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
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(안 제1조 및 제2조)

- 목 적 : 물품 · 공사 · 용역 발주시 안산시 지역생산품 우선구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.
- 용어의 정의
 - 지역생산품 :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한 물품 · 공사 · 용역 · 서비스 등
 - 지역업체 : 안산시 내에 본사 또는 생산시설(사업장을 포함한다)이 소재한 중 · 소기업 및 소상공인

-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함(안 제3조)

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 등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

- 시장의 책무를 정함(안 제4조)

- 지역업체 보호 및 육성, 지역업체 관련 제도개선, 기술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정책 지속적 개발 및 추진
-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실행계획 수립

- 지역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5조)

-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 노력
-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 · 구매와 공사 · 용역 · 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업체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노력

- 제정 조례안 : 붙임1
-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2
-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: 붙임3
- 예산수반사항 : 해당 없음
- 사전예고 : 의견 없음
 - 입법예고 : 2020. 3. 6. ~ 3. 26.(20일간)
- 기타 참고사항
 - 방침 결재문

【붙임1】

안산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안산시 지역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지역생산품” 이란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한 물품·공사·용역·서비스 등을 말한다.
2. “지역업체”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서 안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내에 본사 또는 생산시설(사업장을 포함한다)이 소재한 업체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」 등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.

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지역업체 경영 안정과 성장 지원을 위하여 지역업체 보호 및 육성, 지역업체 관련 제도개선, 기술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② 시장은 지역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공사·용역·물품 등 발주 시 지역업체 우선 적용 및 구매
2. 공사·용역·물품 등 구매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의 지역업체 기술력 (특허, 신기술, 조달 우수 구매 인증기업 등) 적용
3. 지역업체 생산제품이 없을 경우 유사물품 대체 검토

제5조(지역생산품 우선 구매) ①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·구매와 공사·용역·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업체의 지역생산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·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1. 시 관내에 소재한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

2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시 출자·출연기관
 3. 「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4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시에서 교부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
- 제6조(포상)** 시장은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와 관련된 아이디어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및 안산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을 할 수 있다.
- 제7조(지도·감독)** 시장은 지역생산품의 우선 구매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·감독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회 계 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회 계 과장 김 종 수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계약1팀장 박 문 석 계약2팀장 한 복 수
	담당자 성명·전화	최 부 현 (행정 3076) 김 은 경 (행정 3077)